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

- 아랍권 국가와의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아랍에미리트(UAE)와의 교역·투자 확대와 안정적인 중동 지역 진출 기반 조성을 통한 신 중동 대성황(붐) 확산 계기 마련
-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로 자동차·자동차부품·의약품·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쇠고기·라면·조미김 등 우리 농·축·수산물의 중동 지역 진출 발판 마련
- 아랍에미리트(UAE) 자유무역협정 상 최초의 온라인게임 서비스 시장 개방, 최고 수준의 시청각 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중동 지역에서의 K-콘텐츠 확산 여건 마련
- 아랍에미리트(UAE)산 원유 관세 철폐, 에너지·자원 협력 및 바이오 경제협력 부속서 채택 등으로 한·아랍에미리트(UAE) 간 공급망 강화 및 확대 기반 조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 14일(토) 서울에서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Thani bin Ahmed Al Zeyoudi)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한·아랍에미리트(UAE)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 선언문(별첨)에 서명했다. 협상 타결 기준으로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24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상품·서비스 등 분야 시장접근 확대에 더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포괄적 교류 및 협력 강화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의 결과로 ‘신 중동 대성황(붐)’이 조성되면서 양국 통상당국 간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조속한 체결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번 한·아랍에미리트(UAE) 통상장관회담 계기에 협상 타결을 선언할 수 있게 되었다. 안 본부장과 알 제유디 장관은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이 양국 간 교역·투자의 확대와 안정적이며 호혜적인 공급망 구축의 계기로

활용함과 함께,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경제협력 조항(챕터)에 부속서로 포함된 에너지·자원, 바이오, 첨단산업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하는 데 공감하였다.

중동 지역 핵심 우방국인 아랍에미리트(UAE)와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는 2022년 약 19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 순위로 16번째다. 양국 간 상호 직접투자 규모는 2022년 누계 기준 약 71억 달러이다.

아랍에미리트(UAE)는 발달한 기반(인프라)과 안정적인 거시경제를 바탕으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 권역의 중심지(허브)로서 주요한 세계적(글로벌)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약 178개의 우리 기업도 아랍에미리트(UAE)에 진출해 있는데,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우리 기업의 아랍에미리트(UAE) 진출에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면서 아랍에미리트(UAE)뿐만 아니라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될 수 있으면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④ 시장 개방

[상 품] (품목 수) **한**92.8%, **아랍에미리트(UAE)**91.2%, (수입액) **한**72.2%, **아랍에미리트(UAE)**82.0%

- (한→아랍에미리트(UAE)) 주력 수출품(자동차/친환경 차, 부품, 무기류, 가전 등), 농·축·수산물(쇠고기, 닭고기, 신선과일, 라면, 인삼류 등) 등 관세 철폐
- (아랍에미리트(UAE)→한) 원유, 석유화학제품(일부), 대추야자 등 관세 철폐 나프타 관세 감면(0.5→0.25%)

[서비스]

- 우리 측 관심 분야인 온라인게임, 의료 서비스(의원, 대형병원, 산후조리 등), 시청각(영화, 음악 등), 건설 분야 개방

[정부조달]

-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아랍에미리트(UAE)는 미가입)과 유사 수준 협정문 채택
- 양측 모두 중앙 정부 기관(우리 44개, 아랍에미리트(UAE) 27개) 개방
 - * 아랍에미리트(UAE) 측은 앞으로 자국법상 조달 양허 가능 기관 확대 시 자동 적용토록 규정

② 협정문 : 총 19개 장(章)

[원산지]

- 역외산 재료 활용이 많은 공산품, 석유화학 제품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은 완화된 기준 적용
- 낙농품, 분유, 김 조제품 등은 역내산 원료 사용하는 경우에만 원산지 인정

[디지털]

- 전자적 전송 무관세, 디지털 제품 비차별 대우 의무, 아랍에미리트(UAE)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및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의무 포함

[지재권]

- 온라인상 지재권 침해 집행 강화 등 아랍에미리트(UAE) 기체결 중 가장 높은 수준 규범

③ 경제협력 : 5개 부속서

[에너지·자원] ※ 아랍에미리트(UAE)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최초로 에너지·자원 협력 규정 채택

- 에너지 부문 상·중·하류, 재생에너지, 수소·탄소 포집 및 저장(CCUS) 협력 등

[바이오 경제] ※ 우리나라가 체결 간 자유무역협정 최초로 바이오 경제협력 규정 채택

-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화학,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자원 등 협력 상세 규정 도입
(정부 주도의 기업 협력 증진, 공급망 교란 시 긴급 조치 협력, 인적 교류 등)

① 시장 개방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통해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 상품 시장의 경우,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는 92.8%, 아랍에미리트(UAE)는 91.2%에 적용되는 관세를 협정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하였다.

* 시장 개방 수준: (품목 수 기준) 한 92.8% 아랍에미리트(UAE) 91.2% (수입액 기준) 한 72.2% 아랍에미리트(UAE) 82.0%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하는 주력품목인 자동차·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제품(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원동기와 밸브, 합성수지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차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아랍에미리트(UAE)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에 비해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의료기기·화장품 등 수출 유망품목과 쇠고기·닭고기·신선과일·라면·인삼 등 농축산식품 및 조미감·멸치·전복·고등어 등 수산식품에 대해서도 아랍에미리트(UAE) 측 관세가 철폐되어, 중동 지역으로의 농수산물 시장 개척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한편 우리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가장 비중이 큰 원유의 경우, 기존 3%에 달하던 우리 측 수입 관세가 10년에 걸쳐 철폐된다. 이로써 우리 정유산업의 원가경쟁력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원유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추야자 등 국내 생산이 없는 농산품목을 개방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석유화학산업의 주요 원료인 나프타의 경우, 관세를 상호 5년간 50% 감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우리 석유화학업계 전반의 가격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 생산 나프타의 대(對) 아랍에미리트(UAE) 수출길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온라인게임, 의료서비스, 시청각, 건설 분야 등 우리 최우선 관심 분야를 아랍에미리트(UAE)가 그간 체결하여 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였다. 아랍에미리트(UAE)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최초로 온라인게임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여, 중동 지역에서 온라인게임 이용시간과 게임 분야 지출액*이 가장 높은 아랍에미리트(UAE)에서의 우리 게임의 진출 확대를 기대하게 되었다. 또한, 영화음악 등 시청각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여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K-콘텐츠의 소비 확산을 도모하였다.

* 아랍에미리트(UAE) 월평균 한국 게임 지출액은 \$68.98(중동 지역 평균 \$38.51), 중동 지역 게임 이용시간 주중 159분/주말 218분(한국 콘텐츠 진흥원)

의료서비스 개방으로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들의 현지 개원 및 원격 진료가 가능해지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 개방으로 한국 의료시스템 수출 및 국제(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정부조달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과 유사한 수준으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아랍에미리트(UAE) 조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어 우리 기업들의 아랍에미리트(UAE) 조달 시장 진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아랍에미리트(UAE)는 자국 연방정부 디지털 조달 시스템을 활용하는 27개 연방기관을 모두 개방했고, 앞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는 연방기관이 확대되는 경우 자동으로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적용되도록 합의하였다.

*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 협정은 각국 조달제도의 절차적 투명성 강화 및 타국 조달 참여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등이 주요 내용

② 협정문

원산지는 우리 주요 수출품인 공산품과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대부분 외국산 재료나 부품을 활용하여 제조되는 점을 고려하여 인정 기준을 완화하였다. 한편, 육류나 낙농품 등 농·축·수산물에는 국내 관련 업계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역내산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원산지로 인정되도록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원산지 증명은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한편 아랍에미리트(UAE)가 체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최초로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이 허용되면서, 아랍에미리트(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수집한 중요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서버 등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의무 포함으로 기업이 현지에서 새로운 서버를 설치하지 않고도 기존 서버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현지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아울러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하에서의 저작권 보호, 영화나 음악 등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단을 확보하였다.

③ 경제협력

양국이 그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함께 발전시켜 온 협력 관계를 앞으로 더욱 가속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경제협력 조항은 물론 에너지·자원, 바이오 경제, 첨단농장(스마트팜), 건강관리(헬스케어), 첨단산업 등 5대 핵심 협력 분야별 부속서를 포함하였다.

무엇보다 아랍에미리트(UAE)가 지금까지 체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으로서는 최초로 에너지·자원 협력 부속서를 채택하여, 에너지 부문 상·중·하류,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 포집 및 저장(CCUS) 등 협력을 규정하였다. 또한,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화학,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자원 등 바이오 경제협력에 관한 별도 부속서도 자유무역협정 최초로 채택하였다. 이로써 평상시 양국 기업 간 협력 주선은 물론 공급망 교란 시 정부 간 긴급 협력에 관해서도 상세히 규정하게 되었다.

담당 부서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박근오 (044-203-5830)
		담당자	사무관	박희경 (044-203-5832)
		담당자	사무관	권지은 (044-203-5837)
		담당자	사무관	성소윤 (044-203-5834)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자유무역협정상품과	책임자	(代)과 장	박다정 (044-203-5790)
		담당자	사무관	오혜원 (044-203-4811)
		담당자	사무관	이지영 (044-203-5795)
		담당자	주무관	구용주 (044-203-5796)
		담당자	전문관	김예슬 (044-203-5798)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	책임자	과 장 팀 장	한주실 (044-203-5810) 김미송 (044-203-5812)
		담당자	주무관	김애선 (044-203-5814)
		담당자	주무관	김지원 (044-203-5817)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자유무역협정규범과	책임자	과 장 팀 장	박다정 (044-203-5820) 김보연 (044-203-5821)
		담당자	사무관	유영석 (044-203-5828)
		담당자	사무관	심수진 (044-203-5823)
		담당자	주무관	권영준 (044-203-5829)



JOINT STAT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ON THE CONCLUSION OF NEGOTIATIONS
FOR THE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We, the Minister for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Dukgeun Ahn, and the Minister of State for Foreign Trade of United Arab Emirates, Thani bin Ahmed Al Zeyoudi, are pleased to announce today the conclusion of negotiations on the Korea-UAE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The Korea-UAE CEPA constitutes as an extensive agreement that will contribute to enhancing bilateral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by substantially eliminating tariffs, reducing non-tariff barriers and promoting trade in goods, services and investments.

The countries have concluded the negotiations, reaching a significant milestone in light of the strategic bilateral relationship. The CEPA will serve as a catalyst for the enhancement and promotion of economic relations while also increasing and diversifying bilateral trade.

The CEPA, which creates a framework for the countries' economic trade relations, will provide favorable conditions for the business communities and serve as a platform for cooperation through mechanisms under the Agreement, thus allowing for ongoing dialogue to foster greater economic ties.

Signed in Seoul on October 14, 2023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Dukgeun Ahn
Minister for Trade

Thani bin Ahmed Al Zeyoudi
Minister of State for Foreign Trad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타결에 관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 간 공동선언문

우리, 안덕근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아랍에미리트 대외무역특임장관은 오늘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관한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선언하게 되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은 실질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고 비관세 장벽을 낮추며 상품, 서비스 및 투자 교역을 증진함으로써 양국 교역과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광범위한 협정이 된다.

양국은 본 협상을 타결하여 전략적인 양국 관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하였다. 이 협정은 양국 교역을 증가시키고 다변화하면서 경제 관계를 강화하고 증진하기 위한 촉매가 될 것이다.

양국의 경제 교역 관계의 틀을 만드는 이 협정은 기업 공동체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협정에 따른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더욱 발전된 경제적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2023년 10월 14일 서울에서 서명하였음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랍에미리트 정부를 대표하여

안 덕 근
통상교섭본부장

알 제유디
대외무역 특임장관

참고 3

한-UAE 교역 및 투자 현황

□ (교역) 양국 교역규모는 '22년 기준 약 195억불(전체 국가 중 16위)

* '23.5월 기준, 수출 28위, 수입 10위(중동中 교역 2위, 수출 2위, 수입 3위)

○ 교역규모는 '22년 195억불, '23.1~5월 86억불로 전년 동기(60억불) 대비 43% 증가

< 우리나라의 對UAE 연도별 교역 현황(단위: 백만불) >

구 분	'17	'18	'19	'20	'21	'22	'23.5
상품수출	5,388	4,588	3,470	3,660	3,975	3,967	1,898
상품수입	9,557	9,287	8,991	5,696	7,319	15,493	6,726
총교역량	14,945	13,875	12,461	9,356	11,294	19,460	8,624
무역수지	△4,168	△4,699	△5,521	△2,036	△3,344	△11,536	△4,828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한국은 주로 자동차 관련 품목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 및 천연가스 등 광물성연료 대량 수입

< 對UAE 수출입 상위 5대 품목(단위: 백만불, %) >

주요 수출품					주요 수입품				
품 목	'22년		'23.1~5		품 목	'22년		'23.1~5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 체	3,967	△0.2	1,898	4.8	전 체	15,493	111.7	6,726	59.6
자동차	338	81.5	202	52.8	원유	9,225	144.8	3,902	69.9
자동차부품	339	△5.8	164	5.2	석유제품	4,650	72.2	2,174	70.2
우라늄	65	△64.5	124	245.1	천연가스	640	315.7	336	128.1
석유제품	156	△13.4	91	△0.4	알루미늄	400	12.6	95	△55.8
기호식품	178	9.2	78	2.8	동광	143	126.9	57	26.9

* 출처 : 한국무역협회(MTI 3단위 기준)

□ (투자) '22년 누계 기준 양국 간 직접투자 규모는 약 71억 불로 對 UAE 투자는 36.6억 불, 對한국 투자는 34.9억 불 수준

< 연도별 양국 간 직접투자 규모 (신고금액 기준, 단위: 백만불) >

구분	'17	'18	'19	'20	'21	'22	'23.3	누계
한국→UAE	236	47	484	698	52	55	26	3,659
UAE→한국	1,014	541	261	496	446	201	50.5	3,492

* 출처 : 수출입은행(한국→UAE), 산업통상자원부(UAE→한국)

참고 4

「한-UAE CEPA」협상 추진 경과

- '21.4월 UAE측은 한-GCC FTA 협상과 별도의 한-UAE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CEPA)* 협상 개시 제안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한-GCC* FTA 협상이 10년 이상 교착 상태('07년 협상 개시 후 '10년 중단)임을 감안

*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UAE,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의 지역 협력 기구

- '21.10월 한-UAE CEPA 추진 공동선언문 발표(양국 통상장관)

* 경제적 타당성분석('21.5~7월), 공청회·국회보고('21.11월) 등 통상조약법상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

- '23.8월 UAE측은 한-UAE CEPA 협상의 조속 타결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

* G20 계기 한-UAE 통상장관 회담('23.8월) 등

- 한-UAE CEPA 제1차('23.9월, 두바이)·제2차(10월, 서울) 공식협상 진행

- 공식협상 개최에 선행하여 협정문 관련 서면 의견 교환(7~8월) 및 수석대표 협의(9월, 수시) 계기 협상 범위 및 목표 관련 입장 조율